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8세(2018년생)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2014년생) (*연령: 2014.01.01.~2018.12.31.)	
선정기준 (택 1)	① 청소년상담사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② 임상심리사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연계 의뢰(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⑤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의 서비스 연계 의뢰(추천 공문, 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 같음 가능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소견서(추천서) 발급자가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 (자격증 사본 내 생년월일 삭제 가능)	
우선순위	①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③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정부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첼로 중 택 1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1:3 실시 ③ 정서순화 프로그램: 놀이 및 예술재활 등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1:3 실시 ④ 합주: 서비스 참여 4개월차 부터 실시(월 1회) ⑤ 연주회 관람: 자체 연주회 인정 불가(반기별 1회) ⑥ 향상음악회 실시(반기별 1회) ⑦ 무상악기대여: 참여 1개월 이후부터 가능 ⑧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 서비스 실시, 사례회의 결과 보고(월 1회)	
확인사항	① 기관방문형(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② 악기대여 관련 분실, 파손 등의 책임규정은 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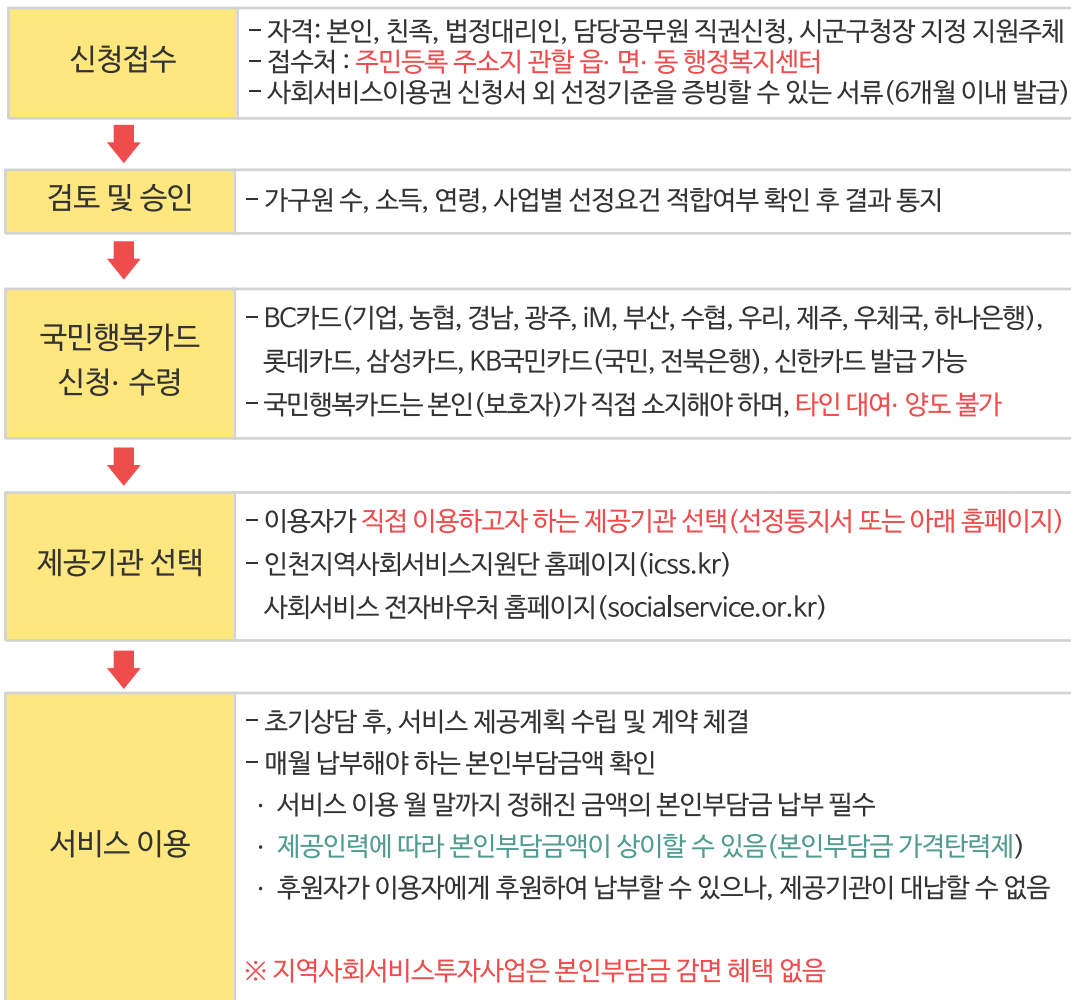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연령	만18세(2008년생) 이하 (* 연령 : 2008.01.01일생~)	
선정기준 (택 1)	① 의사 자체 소견서(진단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② <u>임상심리사</u>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③ <u>정신건강임상심리사</u>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④ 청소년상담사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자격증 사본 ⑤ <u>정신건강복지센터</u> 의 서비스 연계 의뢰(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⑥ <u>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u> 이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⑦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자체 소견서와 언어지원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함/①~⑥, ⑧ 기준으로도 신청 가능) ⑧ <u>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u> 의 서비스 연계 의뢰(추천공문, 임상심리평가결과) -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 같음 가능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소견서(추천서) 발급자가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자격증 사본 내 생년월일 삭제 가능)	
우선순위	①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③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중복제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치료지원사업(인천시교육청),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 공시립유치원유아상담지원사업(인천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의 전문성에 따라 본인부 담금액 결정 (기관 협의)	월 180,000원~240,000원 범위 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78,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36,000원~9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 본인부담금 54,000원~114,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108,000원 / 본인부담금 72,000원~132,000원
	5등급(중위소득 160%초과)	정부지원금 36,000원 / 본인부담금 144,000원~204,000원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놀이·언어·인지·미술재활 중 선택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③ 부모상담 (주 1회씩 월 4회, 회당 10분 내외) ④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필요 시) ※ ③ 생략 시, ②를 50분간 제공	
확인사항	기관방문형 (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신청절차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사업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인천
시민을
위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오감쑥쑥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연령	만4세(2022년생)~만6세 이하(2020년생) (* 연령 : 2020.01.01.일생~2022.12.31.일생)	
우선순위	①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② 오감쑥쑥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중복제한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가격	월 13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04,000원/ 본인부담금 26,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91,000원/ 본인부담금 39,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78,000원/ 본인부담금 52,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65,000원/ 본인부담금 65,000원
	5등급(중위소득 160%초과)	정부지원금 26,000원/ 본인부담금 104,000원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놀이지도(월 1회, 회당 40분) ③ 미술활동(월 1회, 회당 40분) ④ 동화구연(월 2회, 회당 40분) ※ ②~④ 모두 1:1 실시가 원칙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회당 60분씩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1:2로 변경하여 실시 가능	
확인사항	재가방문형(이용자 자택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서해구, 검단구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유무는 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2세 (2024년생)~만3세 (2023년생)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 자녀연령 : 2023.01.01.일생~2024.12.31.일생)	
우선순위	①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②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서비스 가격	월 10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2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	정부지원금 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팀 실시 ② 부모&유아 발달단계별 통합놀이 팀 활동, 부모상담 (주 1회씩 월 4회, 회당 50분) ②-1. 만 2세 유아 - 1:5팀 실시 ②-2. 만 3세 유아 - 1:8팀 실시 ③ 양육자 자조모임(연 4회)	
확인사항	① 자녀가 아닌 부모가 이용권자 에 해당(보호자 1명+자녀 1명 준수) ② 기관방문형(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③ 이용권을 부여받은 보호자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보호자 또는 자녀 혼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	

신청절차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 35세 이상(1991년생)인 자 (* 연령 : ~1991.12.31.일생)	
선정기준 (택 1)	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택 1하여 제출 가능한 자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추천서(사업별서식 제19호) & 자격증 사본 & 심리검사결과지* 제출 가능한 자 *심리검사: MMPI-2, K-BDI-II, ASR만 인정가능(BDI-II 인정불가)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소견서/추천서 발급자가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 ※자격증 사본 내 생년월일 삭제 가능	
중복제한	정신건강 토탈케어,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선순위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6개월 이내 발급받은 추천공문 제출)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③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④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신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 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 초과~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제공기간	6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회당 90분) - 1:1 실시 ② 개인심리정서지원(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가족관계, 상호 정서행동 수정, 부모자녀 간 이해, 부부관계 향상 등 - 1:1 실시	
확인사항	기관방문형 ※ 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u>자택, 카페, 종교시설 등 X</u>) ※ 비대면 서비스 실시 불가 ※ 서비스 진행 시, 집단규모가 <u>1(제공인력):1(이용자)</u> 을 초과해선 안됨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 제공기관 관계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유의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 (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지역
맞춤형
사
회
서
비
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시지역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18세 이상 (2008년생)인 자 (* 연령 : ~2008.12.31.일생)
선정기준 (택 1)	① 장기요양 등급외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이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로부터 추천서 발급받아 제출가능한 자 ② 장기요양 등급외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이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따른 사회복지관 소속 사례관리 담당자로부터 추천서 발급받아 제출가능한 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중복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점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제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군)의 경우,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 공문 발송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1인 가구
서비스 가격	월 320,000원 정부지원금 288,000원 / 본인부담금 32,000원
제공기간	6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증상에 따른 개입서비스 :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1:1 실시 ※ 월 10회, 최대 20시간 한도 / 회당 최소 2시간 이용 ※ 월 한도 서비스로, 제공기관 계약 이전 미사용 바우처를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2시간 초과하여 이용 희망 시, 1시간 단위로 추가 이용 가능
확인사항	① 한 가구 당 1인 대표로만 신청 가능 ② 재가방문형(이용자 자택 외의 장소에서 실시 불가)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 <u>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u>
소득 및 연령	①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61년생)이상인 자 (* 연령 : ~1961.12.31.일생) ② 기초연금 수급자
중복제한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우선순위	①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②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서비스 가격	월 160,000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그램 제공(주 2회씩 월 8회, 회당 80분) - <u>1:5 실시</u> = 인지건강학습지(20분)+심리지원(20분)+뇌체조(10분)+보드게임(30분) ③ 작품모음 전시회(연 1회)
유의사항	기관방문형 ※ <u>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자택, 카페, 종교시설 등 X)</u> ※ <u>비대면 서비스 실시 불가</u> ※ <u>서비스 진행 시, 집단규모가 1(제공인력):5(이용자)를 초과해선 안됨</u>

신청절차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 타 시·도 소재 제공기관 이용 가능	
연령	만24세(2002년)이하 (* 연령 : 2002.01.01.일생~)	
선정기준 (택1)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 muscular dystrophy)으로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소견서) 발급자가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	
서비스 가격	월 120,000원 ※ 정부지원금(바우처) 반기분 생성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9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3등급(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84,000원 본인부담금 36,000원
제공기간	12개월(5회 재판정 가능, 최대 72개월까지 지원) ※ 72개월 초과 이용 불가(생애 한 번)	
서비스 내용	①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 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 ② 점검 및 유지보수(연 2회 이상 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	
확인사항	① 만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②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 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 ③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본인부담금 등급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④ 재가방문형(이용자 자택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택1)	①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만60세(1966년생) 이상인 자 (* 연령 : ~1966.12.31.) 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질병분류 코드 G,M,I 및 R81,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의뢰(추천공문 제출) ⑤ 임신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 ⑥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를 포함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인 자(연령기준 없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발급자는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	
우선순위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서비스(계양구)	
서비스 가격 *26년 선정 이용자부담 해당	월 18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54,000원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72,000원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이용자 상담(5분)+비수기요법(10분)+수기요법(45분) - 1:1 실시	
확인사항	① 질병분류코드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에 해당 ② 기관방문형(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 <u>경로당, 복지관, 이용자 자택 등 X</u>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 <u>제공기관 관계자</u>는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유의
↓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u>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u>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택 1)	① 만65세 이상의 정신장애인(※연령 : ~1961.12.31.일생) ② 만64세 이하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자(※연령 : 1962.01.01.일생~) ③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 의뢰받은 자(추천공문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진단서/소견서 발급자는 별도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어야 함
우선순위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②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③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가격	월 200,000원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제공기간	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증상에 따른 개입서비스(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1:1 실시 · 위기상황 개입(전문상담서비스, 보건복지의료서비스 연계) · 증상관리/약물관리 · 일상생활지원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③ 가족교육, 여가활동 제공(선택적 제공)
확인사항	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 불가 ②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 ③ 재가방문형 ※ 이용자 자택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제공기관, 카페, 종교시설 등 X) ※ 비대면 서비스 실시 불가

신청절차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연령	만6세(2020년생)이상~만63세(1963년생)이하인 자 (* 연령 : 1963.1.1.~2020.12.31.일생)	
선정기준	등록장애인이면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 본인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체중제한 : 73kg 이하)	
우선순위	①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② 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서비스 가격	월 22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98,000원 본인부담금 22,000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7,000원 본인부담금 33,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지원금 176,000원 본인부담금 44,000원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② 재활승마 : 준비 10분+기승 20분+부모상담 10분(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 1명당 제공인력 4명 투입 원칙	
확인사항	① 기관방문형(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② 이용자 1명당 제공인력 4명 투입 필수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 (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565,000	92,428	20,0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인
천
시
민
을
위
한

2026년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검색하기

▲ 이용자 에티켓 안내

지역
맞
춤
형
사
회
서
비
스

실시지역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제공기관, 이용자 유무는 구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5세(2021년생)~만18세(2008년생)이하 (* 연령 : 2008.01.01.일생~2021.12.31.일생)	
선정기준 (택 1)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 입급생이면 가능)으로 특수교육대상 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학교장 발행) 제출가능자 ③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통지서(교육청 발행) 제출가능자 ④ 특수학급 입급자격이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 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우선순위	①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② 장애아동학습지원 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한 경우	
서비스 가격	월 180,000원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100% 이하)	2등급(중위소득 10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36,000원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① 사전·사후검사(연 2회) - 1:1 실시 ② 인지학습 진행 및 일상생활훈련(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1:1 실시 ③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내용 설명, 욕구조사(주 1회씩 월 4회, 회당 10분) - 1:1 실시	
확인사항	재가방문형 (이용자 자택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	

신청절차

신청접수	-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지원주체 -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외 선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
검토 및 승인	- 가구원 수, 소득, 연령, 사업별 선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결과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BC카드(기업, 농협, 경남, 광주, iM, 부산, 수협, 우리, 제주,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국민, 전북은행), 신한카드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보호자)가 직접 소지해야 하며, 타인 대여·양도 불가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기관 선택(선정통지서 또는 아래 홈페이지) -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icss.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서비스 이용	- 초기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액 확인 · 서비스 이용 월 말까지 정해진 금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이 대납할 수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당일 바우처 카드 본인 지참(타인 소지 불가)
2. 이용자격 해지 사유
 -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본인부담금을 미납
 - 인천시 내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
3. 선정 이후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조정 또는 이용자격 해지
4. 무단결석 → 본인부담금 환급 불가(하루 전 까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함)
5. 무리한 서비스 요구,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선 안됩니다.